

# 고 발 장

- 고 발 인 1. 권영국  
2. 이정원  
3. 정정훈

- 피고소인 1. 김경한 법무부장관  
2.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 원형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죄 명 : 1.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죄  
2. 직권남용죄

2008. 6. 2.

서울지방법원 제1부 2008. 6. 2. 결정

# 고 발 장

고 발 인 1. 권영국

2. 이정원

3. 정정훈

피고발인 : 1. 김경한 법무부장관

2.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 원형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죄 명 : 1.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죄

2. 직권남용죄

##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로 이 고발을 제기하므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사 실

###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권영국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라 합니다)의 자문변호사로서 민변이주모임 대표이고, 고발인 이정원은 이주노조의 교육선전차장으로서 이주노동자문제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같은 정정훈은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로서 이주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피고발인 김경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장관이며, 같은 추규호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며, 같은 원형규는 서울지역 내의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입니다.

### 2. 사건의 경과

(1) 2008. 5. 2. 7:30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같은 날 20:20분경 서울 XX XXX XXXX XXXX 소재 이주노조 사무실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10여 명 이상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이 위 사무실 바로 옆 XXX XXX 횡단보도 앞에서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서 걸어가고 있던 토르너 림부(Limbu Torna Bahadur, 네팔) 이주노조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당시 동행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 정영섭이 항의하였으나 단속반들은 사무차장을 제압하고 목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1:00경 XX구 XX동에 소재한 소부르(Sabur MD Abdus, 방글라데시) 이주노조 부위원장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해있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이 무단으로 위 소부르 부위원장의 집안으로 몰려 들어가 집안에 있던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하고 연행하였습니다.

(3) 단속반 직원들은 토르너 위원장을 25인승 단속차량에 태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잠시 들렀다가 근처에 있는 양천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다른 차로 바꿔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 부근에서 다른 차량으로부터 소부르 부위원장을 인계받아 같은 차에 실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위 두 사람은 다음날인 5. 3. 00:30경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여 구금되었습니다.

(4) 같은 해 5.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토르너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이주노조 부위원장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강제퇴거명령서 및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증제1호증의 1, 2 긴급보호서(토르너), 증제1호증의 3, 4 보호명령서(토르너), 증제1호증의 5 강제퇴거명령서(토르너), 증제2호증의 1, 2 긴급보호서(소부르), 증제2호증의 3, 4 보호명령서(소부르), 증제2호증의 5 강제퇴거명령서(소부르)}.

(5) 같은 해 5. 5. 위 두 사람은 권영국, 황필규, 장서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 이의신청서 접수확인증, 증제3호증의 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6) 같은 해 5. 8. 고발인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고발인 권영국 변호사, 그리고 고발 외 장서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두 사람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의 단속과 보호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진정과 동시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1550호 진정사건 - 증제4호증 진정서).

(8) 같은 해 5. 9. 대리인 장서연,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증제5호증의 1 소송서류 접수증, 2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장 사본, 3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 사본).

(9) 같은 해 5. 15. 11:00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관련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번호 08진인 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증제6호증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결정문).

그리고 같은 해 5. 15. 13:00~14:00경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과장은 긴급구제 결정사실을 우선 유선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0) 같은 날 13:30경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는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보호실에서 불러내었고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직원들에 의해 강제퇴거 집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위 두 사람은 현재 행정소송과 인권위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변호인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11) 같은 날 16:1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병철 심사과장은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의 강제퇴거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는데,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시작할 때 본인들에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공항에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 같은 날 16:44경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병철 심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5. 9.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두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무리해서 긴급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최소한 법원에서 위 효력정지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은 "집행권자로서 강제퇴거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이란 것과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서울출입국의 입장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영똥하게도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이나 다른 재판을 통해서 다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연 변호사는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변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개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13) 같은 날 17:10~17:30경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14) 같은 날 17:29경에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은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에게 이주노조 지도부의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증제7호중의 1, 2 보호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 증제7호중의 3, 4 강제

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

(15) 같은 날 17:30경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과장은 두 사람에게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문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팩스로 통보하였습니다.

(16) 같은 날 17:35경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수신으로 하여 심사과장에게 “토르너, 소부르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요청” 제목의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장 사본,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본, 사건진행내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증제8호증의 1, 2 강제퇴거 집행정지 요청 공문(수신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같은 날 18:00~20:00경 AMNESTY INTERNATIONAL, 한국 정부에게 강제 퇴거 중단 하라는 긴급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17) 같은 날 18:10경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 앞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와 첨부자료를 팩스를 보냈습니다(증제9호증의 1, 2 강제퇴거 집행정지 요청 공문(수신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증제10호증의 1, 2 강제퇴거 집행정지 요청 공문(수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8) 같은 날 19:0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와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 같은 날 20:30경 인천공항에서 두 사람에게 대한 출국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20) 같은 날 21:12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토르너 위원장이 고발인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되었는데, 같은 비행기에 소부르 부위원장도 탑승하고 있으며, 출입국 직원 4인이 함께 탑승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21) 같은 날 21:30경 토르너 위원장으로부터 비행기가 이륙한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로써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강제추방되었습니다.

### 3.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 위원회가 하는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그런데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실과 같이 피고발인 김경한은 강제퇴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으로서, 같은 추규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본부장으로서, 같은 원형규는 서울지역 내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와 지시를 통해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강제 퇴거시키기로 공모하고, 2008. 5. 15.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번호 08진인 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결정을 통보받아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진정사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진정에 관한 조사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국으로 강제출국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피해자들을 출국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증제11호중의 1, 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나. 직권남용죄

또한 피고발인들은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와 지시를 통해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강제퇴거시키기로 공모하고,

2007. 5. 9. 대리인 장서연, 권영국 변호사가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두 사람에게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강

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고(증제5호증의 1~3), 5. 15. 16:44경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병철 심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두로 통지하면서 최소한 법원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7:43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팩스를 통해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공문과 위 취소소송의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의 접수확인증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제8호증의 1, 2, 증제9호증의 1, 2, 증제10호증의 1, 2), 직권을 남용하여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 토르너와 같은 소부르의 강제퇴거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마저 방해한 것입니다.

#### 4. 결 론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토르너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강제퇴거시키기로 공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토르너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방법

- |                |              |
|----------------|--------------|
| 1. 증제1호증의 1, 2 | 긴급보호서(토르너)   |
| 3, 4           | 보호명령서(토르너)   |
| 5              | 강제퇴거명령서(토르너) |
| 1. 증제2호증의 1, 2 | 긴급보호서(소부르)   |



2008. 6. 2.

고발인 1. 권영국

2. 이정원

3. 정정훈

서울지방검찰청 귀중